

## 한국적 커뮤니케이션 개념의 역사적 이해

### - ‘언론’ 유사 개념으로서의 ‘간쟁’에 대한 고찰

김영주    경남대학교 신문방송정치외교학부 교수

#### 1. 머리말

‘언론’(言論)은 사전적 의미로 ‘말이나 글로 자기 사상을 발표하여 논의함’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흔히 영어인 'Speech' 또는 'Press'를 일본에서 번역하여 한말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번역어’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중국의 후한 말에 ‘언론’이라는 용어가 사서에 자주 출현하고 있다(『後漢書』符融傳, “李膺風性高簡, 每見融, 輒絕他賓客, 聽其言論”; 『三國志』蜀志, 蔣琬傳, “琬與言論, 時不應答”; 『三國志』蜀志, 廖立傳, “稱立意氣不衰, 言論自若”). 따라서, 언론 단어는 중국의 경우 적어도 2세기 말경부터 3세기 초반까지 자주 사용된 용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단순히 ‘구두의 언어’를 지칭하였다.

최정호(1998)에 따르면 ‘언론’이라는 용어가 원래 ‘말’에서 ‘매스 미디어’로 외연이 확대되기까지 의미론적으로 5가지 단계를 거쳐 왔다고 인식하였다. 첫째 단계로 언론은 ‘말’ 또는 ‘말하다’ ‘의논하다’라는 뜻이며, 그것은 한자속어로서 언론의 가장 오래된 원래의 뜻으로 보았다.

둘째 단계는 비교적 새로운 언론 개념이다. 19세기 중반이후 한자문화권이 서양문화를 수용하면서 다시 활발하게 사용한 개념으로서, ‘언어를 통해 사상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언론이라는 단어는 구두언어로서 서양어의 'speech'와 'discussion' 또는 'logos' 'rhetoric' 'oratory'의 번역어로 사용되었다.

셋째 단계는 점차 ‘인쇄·출판’을 뜻하는 서양어의 'press'나 'printing'의 번역어로 사용된 것이며, 넷째 단계는 언론을 인쇄·출판의 결과물인 ‘신문(newspaper)의 통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마지막 단계의 언론개념은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정보전달의 대중매체(mass media)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헌을 살펴보면, 삼국시대 승려들의 행적을 적어놓은 금석문이나 경전에 대한 해석서인 논소(論疏)에 언론(言論)이라는 단어가 드물게 보이고 있다(圓測, 『解深密經疏』卷二, “是正智及論, 正智卽是證無二智, 論謂言論”). 여기서 사용된 언론 단어는 ‘언어로 이치를 파헤치다’는 의미로 최정호가 열거한 5가지 언론의 개념과는 다르다.

고려시대로 들어와서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에 ‘언론’이라는 단어가 각각 1번씩 출현하고 있지만 사용횟수가 적어 일상적 용어로 사용한 용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사서에서 나타난 용례를 살펴보면 - ① 『高麗史』列傳第八, 朴寅亮傳 “言論勁直, 無所依違, 時議重之”(필자 번역 : 언론이 굳세고 곧아서 어긋나는 바가 없었다. 그 때의 여론이 그를 중하게 여겼다) ② 『高麗史節要』睿宗文孝大王, 辛丑條, “景仁少力學登科, 三爲諫官, 言論勁直, 無所依違, 時議重之”(필자 번역 : 경인이 어릴 때 학문에 힘써 과거에 합격하였다. 세 번 간관이 되어 언론이 굳세고 발라서 어긋나는 바가 없었다. 그 때의 여론이 그를 중하게 여겼다) - 문장의 주인공들이 모두 간관(諫官)이어서 단순히 ‘말하다’는 의미보다 ‘군주의 정치득실에 대한 비판’ 이른바 간쟁행위이다. 이것은 고려시대에 사용된 언론 개념이 ‘단순히 말하다’가 아닌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행위’로서, 현대 언론 개념의 하나에 포함된다.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와는 다르게 ‘언론’ 단어를 일상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언론’(言論) 단어가 대거 등장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하면, 총 508건(세종 3건, 단종 1건, 세조 1건, 성종 11건, 연산조 5건, 중종 98건, 인종 1건, 명종 35건, 선조 105건, 광해조 38건, 인조 25건, 효종 12건, 현종 22건, 숙종 55건, 경종 6건, 영조 36건, 정조 41건, 순조 7건, 헌종 1건, 고종 5건 등)의 언론 단어가 출현하고 있다. 조선 초기에 간간히 나타나는 언론 단어는 중종이후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여 영정조대까지 그 기조가 지속되다가 순조대부터 고종대에 이르러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조선왕조실록뿐만 아니라 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에서 국가의 중요사항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승정원일기』(인조대부터 고종대까지 사료가 남아 있음)에도 무려 1,174건의 언론 단어가 보이며, 신하들의 상소문을 모아놓은 『간의등록(諫議謄錄)』 등에도 366건의 언론 단어가 나타나 조선시대에는 일상적 용어로 완전히 정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언론’ 단어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은 『세종실록』이다. 1422년(세종 4년) 10월에 임금이 금천부원군 박은에게 제문을 내리기를, “풍격이 씩씩하여 세상사람 누구와도 합하기 어려우며, 언론은 당당하여 배워 쓸 만 하였다. 지방장관이 되면 아전은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감복하였으며 사헌부에 있으면 기강이 떨쳐지고 기풍이 엄숙하였다”(『세종실록』 세종 4년 10월 丙申條, “風儀落落乎誰合, 言論堂堂而可師用之, 州牧則吏畏而民懷, 置諸臺閣則綱振而氣肅”)라고 기술하였다.

『세종실록』(세종 28년 5월 庚午條, “然觀臺省言論, 頗有不快物議者”)을 비롯하여 『성종실록』(성종 3년 12월 辛未條, “臺諫言論雖過, 不可左遷示貶”), 『중종실록』(중종 2년 5월 癸卯條, “殿下雖優容不允, 言論益切, 臣等更議, 當遠竄”), 『선조실록』(선조 29년 12월 己丑條, “臣等所以待罪言論者何居?”), 『숙종실록』(숙종 31년 1월 辛丑條, “獨朴鳳齡言論, 侃侃可觀”), 『영조실록』(영조 17년 3월 辛巳條, “以爲聖上不復以言論是非望臺閣, 則此於世道國體, 關係不細”) 등에 나오는 ‘언론’ 단어는 언책자(言責者)인 대간이나 소속관청인 대각[臺省]과 관련지어 나타나거나 사대부들의 상소문에 있어, ‘군주나 정부의 정치특실을 비판하는 언론활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에서 사용한 ‘언론’ 단어가 오직 한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 3세기 전후 고대 중국사서에서 사용되었던 ‘단순히 말하다’의 의미를 포함하여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행위’ 등을 다양하게 함의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각 문헌에 나타나는 ‘언론’의 정확한 개념 정의는 각기 사용된 문장의 전후 문맥을 통해 유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만의 최대 사전인 『中文大辭典』에 따르면 언론(言論)은 ‘언어의론야’(言語議論也)인데, 이것의 첫 자와 끝 자를 모아서 만든 합성어이다. ‘언’(言)은 ‘바른 말’(直言)을 의미하고, ‘어’(語)는 ‘결점을 들어 비난·공격하는 말’(論難)을 의미하며, ‘의론’(議論)은 ‘어떤 논제를 둘러싸고 각자의 의견을 열거하는 것’을 의미한다(『中文大辭典』(修訂版) 第八冊, 言論條). 따라서, ‘언론’이란 ‘어떤 논제에 관해 바른 말 또는 결점을 들어 비난·공격하는 말을 통하여 각자의 의견을 나타내는 일’을 뜻한다. 이것은 최정호가 상술한 5가지 언론개념 가운데 두 번째 의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언론의 ‘언’(言) 자는 갑골문에도 나오는 오래된 글자로서, 매울 ‘신’(辛)과 입 ‘구’(口)의 회의문자이다. 이것은 언론이 남의 비위를 맞추는 미언(美言)이나 곡언(曲言)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곧고 매운 말(直言)이다. 비록 ‘귀를 거슬리게 하지만 바른 행위로 인도하는 쓴

소리'[忠言逆耳, 利於行] 즉, 비판하는 말이 언론인 것이다.

언어학 이론 가운데 'Sapir-Whorf 가설'이 있는데, 요약하면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고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해당 언어가 없으면 그에 해당되는 사고를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해당 행위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언론 단어가 없었던 고려시대 전반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언론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가? 삼국시대에도 군주의 언행에 대해 비판하는 신하들의 사례를 『삼국사기』에서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요즈음 일상화된 '언론'이라는 단어 대신에 '간쟁'(諫諍)이라는 단어를 '언론'과 유사 개념으로 삼국시대 초기부터 조선시대 말기까지 줄기차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삼국사기』에는 '간'(諫)이라는 단어를 26건 36회 사용하고 있는데, ① 『삼국사기』 신라본기, 시조혁거세거서간, 38년(BC 20년) “王憤欲殺之, 左右諫止” ② 『삼국사기』 백제본기, 시조온조왕, “十臣諫曰 ...” ③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모본왕 4년 “臣有諫者, 彎弓射之” 등의 기록이 있어, 삼국시대 초기부터 '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선왕조 언론훈은 크게 보아 두 갈래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 하나는 대간제도와 조보제도를 필두로 상소제도와 신문고제도, 경연제도, 구언제도 등의 언론제도에 대한 연구이며, 또 다른 하나는 유학자들 예컨대, 정도전, 조광조, 이율곡, 최한기, 정약용 등의 언론사상에 대한 연구였다(김민환, 1996, 21-35쪽).

조선시대까지 '언론'이라는 단어와 연관시켜 그 다양한 유형이나 기능 및 역할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용례가 드물지만, '간쟁'과 연관시켜 살펴볼 여지는 매우 많은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는 언론사상이나 언론제도 연구보다 더욱 기초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용어 즉, '언론'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 다양한 용례를 가지고 있는 '간쟁'에 초점을 맞추어 그 개념과 유형, 군주의 납간 스타일에 따른 효과, 간쟁 용례 등을 조선시대에 국한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 2. 언론 유사개념으로서의 간쟁 개념과 유형

우리나라에서 '간쟁(諫諍;諫爭)'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웃어른이나 임금께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한다'(『새우리말 사전(상)』, 1980)고 하였다. 대만의 『중문대사전(中文大辭典)』에서는 '간쟁'에 대해 10가지로 다양하게 풀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언론과 관련되는 개념을 추려보면 ①정직한 말로써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証也. 以正直之言悟人也) ②조정안에서 임금의 허물을 멈추게 하는 것(止也. 內之則諫其君之過也) ③군주의 뜻을 거슬리며 아뢰는 것(干也. 干君之意而告之) ④옳고 그름이 서로 섞여 있을 때 그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更革也. 是非相間革更其行也) ⑤선을 지키고 악을 멈추게 하는 것(閒也. 持善閒惡) ⑥곧은 말로써 힘써 바르게 하는 것(直言勤正也) 등 6가지 정도이다. 이 사전은 일본에서 앞서 간행된 『대한화사전(大漢和辭典)』의 견해를 크게 참조하였다.

한편, 중국의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에는 위와 조금 다르게 ①곧은 말로써 부지런히 바로 잡음(直言規勤) ②천자가 과실을 고치도록 힘써 바로잡는 관리(規勤天子改正過失之官) ③바로잡음(規正 ; 挽回) ④책략(謀慮) 등 4가지로 비교적 단순하게 정의하였다.

한편, 고대 중국 철학자인 순자(荀子)는 신하의 자격과 형태를 논의하면서 '간'과 '쟁'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간(諫)이란 군주의 잘못된 일처리로 국가와 사직에 위기가 있을 때 대신이나 황족이 임금에게 진언하여 들으면 좋고 듣지 않으면 직책을 떠나는 것을 이르며, 쟁(爭)이란 임금에게 진언하여 들으면 좋고 듣지 않으면 죽음을 불사하는 것을 이른다”(『荀子』 臣道篇, 第十三, “君有過謀過事, 將危國家, 殞社稷之具也. 大臣父兄, 有能進言於君, 用則可, 不用則去, 謂之諫. 有能進言於君, 用則可, 不用則死, 謂之爭”)고 하였다.

순자는 ‘간’보다 더욱 과격한 진언행위를 ‘쟁’이라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사료들을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간쟁을 붙여 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중국과 대만, 일본의 사전에서 정의하는 ‘간쟁’의 의미는 최정호가 제시한 5가지 개념 가운데 두 번째 개념과 유사하였다. 즉, 현재 사용하는 ‘언론’은 ‘간쟁’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또한, 조선 선조때 간쟁의 직책을 수행하는 ‘간쟁지관(諫諍之官)을 ‘언론지관(言論之官)’으로 지칭하는 사례(『선조실록』 선조 16년 7월 丁酉條 ; 『선조수정실록』 선조 16년 8월 庚戌條, “自古未聞罪言論之官, 而能服其人心, 能安其國家者也”)로 보아, ‘간쟁’과 ‘언론’을 동일한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간쟁에 대한 구분은 중국의 고전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간쟁 유형은 간쟁자의 성격, 왕조의 시대적 상황, 군주의 납간(納諫) 스타일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통례다. 간쟁 유형은 중국에서 5가지 종류[五諫]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설원(說苑)』 정간조에는 정간(正諫) 향간(降諫) 충간(忠諫) 당간(戇諫) 풍간(諷諫)으로 구분하였으며, 『공자가어(孔子家語)』 변정조에는 흘간(譎諫) 당간(戇諫) 향간(降諫) 직간(直諫) 풍간(諷諫)으로 구분하였고, 『백호통(白虎通)』 간쟁조에는 풍간(諷諫) 순간(順諫) 규간(闕諫) 지간(指諫) 함간(陷諫)으로 구분하였으며, 『후한서(後漢書)』 이운전론의 주석에는 풍간(諷諫) 순간(順諫) 규간(闕諫) 지간(指諫) 첨간(諛諫)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예기(禮記)』 곡례하의 공영달소(孔穎達疏)에는 "간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풍간(諷諫) 순간(順諫) 직간(直諫) 쟁간(爭諫) 당간(戇諫)이다. 무릇 간은 풍간이 위가 되고 당간이 아래가 된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태평어람(太平御覽)』 권222에는 "무릇 간에는 그 내용과 방식이 같지 않는데 5가지 종류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풍간(諷諫) 순간(順諫) 규간(規諫) 치간(致諫) 직간(直諫)이라"고 보았다. 『책부원귀(冊府元龜)』 간쟁부 총서에는 "오간이 있는데 그것은 풍간(諷諫) 순간(順諫) 직간(直諫) 쟁간(諍諫) 당간(戇諫)이라"고 기술하였으나, 정작 오간(五諫)을 설명하는 본문에서 풍간(諷諫) 규간(規諫) 직간(直諫) 강간(強諫) 유간(遺諫) 등 5가지를 표제어로 올려놓고 있다. 청나라 강희제의 칙서로 찬술한 백과사전인 『연감유함(淵鑑類函)』 간쟁부의 총서에서는 『백호통』 간쟁편을 인용하고 있다(김영주, 1991b, 131-132쪽).

중국의 영향아래 있었던 조선시대에는 이상하리만큼 오간에 대한 기술은 극히 저조하였다. 조선 중반을 훨씬 지난 시점에 이르러 정약용은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소학주관, 오간조에서 간략히 언급하였다. 그 책에 기술하기를, “오간은 충신의 도리다. 첫째 흘간(譎諫)은 궤변으로 군주를 깨닫게 하는 것이며, 둘째는 당간(戇諫)으로서 어리석으나 꾸밈이 없이 간하는 것이고, 셋째 향간(降諫)으로서 자신을 낮추어서 간하는 것이고, 넷째 직간(直諫)으로서 거리낌 없이 간하는 것이고, 다섯째 풍간(諷諫)은 인품으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 오간의 이름은 『孔子家語』에서 나왔다(五諫者, 忠臣之義也. 一曰譎諫, 以詭言悟主. 二曰戇諫, 愚而朴. 三曰降諫, 下其氣. 四曰直諫, 無所諱. 五曰諷諫, 風動之, 此之謂五諫也. 五諫之名, 出家語)는 것이다. 이어서 ” 『백호통』에서는 오간의 이름이 위와 서로 다르다(“白虎通又以諷諫闕諫順諫指諫陷諫爲五諫)는 점도 함께 부기하였다.

이처럼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에는 간쟁 유형에 대한 기록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간’ 용어나 그 설명은 거의 없는 점으로 보아, 간쟁 유형을 5가지로 구분[五諫]하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성종실록』(성종 24년 8월 戊辰條)과 『효종실록』(효종 6년 11월 庚寅條) 등에 4가지 간쟁 유형이 열거되어 있지만, 오간(五諫)과는 다르게 중국문헌을 단순히 참고한 것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상술한 조선왕조실

록에서 언급한 절간(切諫)-기간(幾諫) 등은 중국문헌에서 오간의 하나로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1> 중국과 조선 사료에 등장하는 오간 유형

출 처	오간 유형	비 고
① 『說苑』 正諫	正諫, 降諫, 忠諫, 戇諫, 諷諫	공자는 오간 가운데 풍간을 따르겠다고 함.
② 『孔子家語』 辨政	直諫, 降諫, 譎諫, 戇諫, 諷諫	상동
③ 『白虎通』 諫諍	闕諫, 順諫, 指諫, 陷諫, 諷諫	상동
④ 『後漢書』 李雲傳論	闕諫, 順諫, 指諫, 諂諫, 諷諫	공자는 풍간이 좋다고 함.
⑤ 『舊唐書』 職官志	直諫, 順諫, 規諫, 致諫, 諷諫	
⑥ 『禮記』 曲禮下, 孔穎達疏	直諫, 順諫, 爭諫, 戇諫, 諷諫	풍간이 최상의 방법 당간이 최악의 방법
⑦ 『太平御覽』	直諫, 順諫, 規諫, 致諫, 諷諫	
⑧ 『冊府元龜』 諫諍部, 總序	直諫, 順諫, 諍諫, 贛諫, 諷諫	공자는 풍간을 따르겠다고 함
⑨ 『冊府元龜』 諫諍部, 本文	直諫, 強諫, 規諫, 遺諫, 諷諫	
⑩ 『淵鑑類函』 人部	闕諫, 順諫, 指諫, 陷諫, 諷諫	상동
⑪ 『成宗實錄』 성종 24년 8월 무진조	正諫, 規諫, 諷諫, 譎諫	
⑫ 『孝宗實錄』 효종 6년 11월 경인조	切諫, 幾諫, 直諫, 風諫	
⑬ 『승정원일기』 숙종 5년 1월 계축조	諷諫, 幾諫, 直諫	

(출전 : 김영주, 2002, 78쪽)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음.

중국과 한국의 여러 사료에서 간쟁 유형에 대해 논의한 것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을 통해 ‘오간’을 분석해 보면 대략 4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⑥, ⑧번이 속한 그룹으로 다른 오간에 들어있지 않은 쟁간(爭諫;諍諫)이 있다. 여기서 이 그룹을 편의상 『예기』 계열이라고 지칭한다. 둘째는 ①, ②번이 속한 그룹으로 다른 오간에는 없는 향간(降諫)과 흘간(譎諫)이 있다. 이것을 편의상 『공자가어』 계열이라

고 지칭한다. 셋째는 ③, ④, ⑩번이 속한 그룹으로 다른 오간에는 없는 규간(闕諫), 지간(指諫), 함간(陷諫) 등이 있다. 이것을 편의상 『백호통』 계열이라 지칭한다. 넷째는 ⑤, ⑦번이 속한 그룹으로 규간(規諫), 치간(致諫)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을 『구당서』 계열이라 지칭한다.

이처럼 사료마다 오간에 대한 용어가 서로 달라서 간쟁에 대한 통일적 유형화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간(諷諫)의 경우 '오간의 하나'로 모든 사료에서 빠짐없이 취급하고 있어,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간쟁 양식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풍간은 공자가 가장 선호하는 간쟁 스타일이었다. 『공자가어』에 따르면, “충신이 임금을 간쟁하는데 다섯 가지 도리가 있다. 오로지 군주를 헤아려 간쟁을 행하는데, 나는 풍간을 따르겠다”(『孔子家語』辨政篇, “忠臣之諫君, 有五義焉, 惟度主而行之, 吾從其諷諫乎”)고 언명한 점으로 볼 때, ‘풍간’은 공자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간쟁 유형으로 간주되었다. 즉, 공자는, “남의 신하된 예의로서 허물을 드러내어 간하지 않는 것이 임금을 모시는 신하의 도리”(人臣之禮, 不顯諫者, 得事君之道矣)라고 생각한 까닭에, 읍간(泣諫)과 같이 드러내어 간하는 당간(戇諫)은 바람직하지 않은 간쟁 유형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공자가 풍간 이외의 간쟁 스타일을 완전히 무시하고 배제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위나라 영공(靈公)에게 진언한 말이 용납되지 않자 언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죽음으로 임금의 마음을 돌이킨 사어(史魚)의 곧음을 칭찬하였으며(『論語』衛靈公篇), 주왕(紂王)에게 간하다가 벼슬을 그만두고 숨어살았던 미자(微子)를 비롯하여 주왕의 무도함을 여러 번 간하다가 종이 된 기자(箕子), 주왕의 숙부로서 여러 번 간하다가 죽음을 당한 비간(比干) 등을 은나라의 인자(仁者)로 칭송한 점’(『論語』微子篇)으로 볼 때, 직간 또는 극간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간의 개념 정의에 관해서는 『백호통』에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사람이란 항상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五常 ; 仁義禮智信]가 있는데, 이 오상과 오간이 서로 일대일 대응하고 있다’고 상정하면서, “풍간(諷諫)이란 재난의 싹을 알고 그 일을 깊이 살펴보아서 드러내지 않고 비유해 간하는 것을 뜻하며 이것은 지혜[智]의 모습이다. 순간(順諫)이란 겸손하고 순하게 말하여 군주의 마음을 거슬리지 않고 간하는 것을 뜻하며 이것은 어짐[仁]의 모습이다. 규간(闕諫)이란 군주의 안색을 살펴서 즐겁지 않을 때는 물러나고 즐거워 할 때는 앞으로 나아가 아뢰는 것을 뜻하며 예의로써 나아가고 물러나는 이것은 예의[禮]의 모습이다. 지간(指諫)이란 실상을 있는 그대로 꾸미지 않고 간하는 것을 뜻하며 이것은 믿음[信]의 모습이다. 함간(陷諫)이란 측은한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 국가의 폐해를 바로 말하고 생명을 망각하면서 임금을 위해 몸이 상하는 것을 무릅쓰고 간하는 것을 뜻하며 이것은 의로움[義]의 모습이다”(『白虎通』諫諍篇)라고 언급하였다.

오간에서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직간(直諫)은 사전적인 의미로 '바른 말로써 바르게 간하는 것'(『中文大辭典』直諫條, “謂直言規諫也”) 또는 '시비와 선악을 기탄없이 말하는 것'(『大漢和辭典』直諫條, “思ふ所を憚らずに述べいさめる. ; 是非善惡を忌憚なく言つていさめる”)을 뜻한다. 즉, 직간(直諫)은 임금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바른 말로써 극렬하게 간쟁(直言極諫)하는 것을 본령으로 삼는다. 이 간쟁 유형은 ‘곧고 바른 말로 간하는’ 정간(正諫) 및 ‘충성스럽게 간하는’ 충간(忠諫)과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었다.

‘사력을 다해 바르게 충고하는’(『漢語大詞典』極諫條, “盡力規勸”) 극간(極諫)은 이미 기

원전에 출간된 『한비자』 외저설좌하편에 이미 출현하고 있다. 이 간쟁유형은 우리나라 사서에 간혹 극언(極言) 또는 극론(極論) 등의 용어와 혼용되기도 하였다. 극간의 극단적 간쟁유형은 ‘죽음으로 간하는’ 시간(屍諫;尸諫)이 있는데, 중국고전에서 열거하는 오간에는 들어 있지 않다. 극간과 비슷한 의미로 ‘생명을 망각하고 간하는’ 함간(陷諫), ‘꾸미지 않고 우직하게 간하는’ 당간(戇諫), ‘임금의 면전에서 다투어 간하는’ 쟁간(爭諫;諍諫), ‘눈물을 흘리며 간하는’ 읍간(泣諫), ‘애절하게 간하는’ 절간(切諫) 등이 존재한다.

규간(規諫)은 일반적으로 ‘충성스럽고 바른 말로써 부지런히 경계하도록 만드는 것’(『中文大辭典』規諫條, “謂以忠正之言, 相勸誡也”)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염심항(閻沁恒)(1960, 29쪽)은 ‘경서의 뜻(經義)과 전례 및 고사를 통해 확실하게 인증이 가도록 간쟁함으로써 군주로 하여금 옳고 그름이나 정치득실을 명확히 변별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념 규정하였다. 규간은 간단하게 ‘사리를 밝혀 간한다’는 의미이다. 규간(規諫)의 ‘규’(規)자가 ‘원형을 그리는 도구’이므로 ‘규칙’ ‘본보기’ 등을 뜻하는 까닭에 ‘전례 및 고사 등을 들이대며 간한다’는 의미가 더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규간(規諫)과 음이 같은 규간(闕諫)이 오간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규간의 ‘규’(闕)자가 ‘엿보다’ 또는 ‘몰래 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군주의 마음 상태를 살핀 뒤 기회를 엿보아 간한다’는 의미이다.

공자가 가장 선호하였던 풍간(諷諫;風諫)은 ‘말을 완곡하게 돌려서 간하는 것’(『中文大辭典』諷諫條, “以婉曲之言, 相勸諫也”) 또는 ‘비유를 들면서 돌려 간하는 것’(『大漢和辭典』諷諫條)이다. 이것은 ‘임금의 기미를 살피서 간하는’ 기간(幾諫), ‘임금의 마음을 거슬리지 않고 아첨하며 간하는’ 침간(諂諫), ‘사실을 속여 간사하게 간하는’ 흘간(譎諫) 등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하들의 다양한 간쟁 스타일들을 군주로부터 정직을 비롯하여 과직·좌천·유배·죽음 등의 화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간쟁 유형들을 위험수위에 따라 ①고위험도 간쟁그룹 ②중위험도 간쟁그룹 ③저위험도 간쟁그룹 등 3가지로 유형화 시킬 수 있다. 첫째 고위험도 간쟁그룹은 군주의 눈치를 살피지 아니하고 생명의 위협을 망각한 채 극렬하고 박정하게 간쟁하는 것을 유형화하였는데, 실제로 군주로부터 인사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둘째 중위험도 간쟁유형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꾸미지 않은 채 고사와 전례를 들면서 바르게 간쟁하는 것을 유형화하였는데, 경우에 따라 선 화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셋째 저위험도 간쟁그룹은 군주의 마음 상태를 살피 그의 기분을 상하지 않은 채 은근하게 돌려서 간하는 것을 유형화하였는데, 화를 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아래는 간쟁유형을 3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표 2> 참조).

<표 2> 간쟁의 위험수위에 따른 분류

간쟁위험도에 따른 분류	구체적 간쟁유형
고위험도 간쟁그룹	極諫, 爭諫(諍諫), 陷諫, 屍諫(尸諫), 直諫, 戇諫, 泣諫, 強諫 正諫, 忠諫, 切諫
중위험도 간쟁그룹	規諫, 指諫, 順諫, 致諫,
저위험도 간쟁그룹	諷諫(風諫), 幾諫, 闕諫, 譎諫, 諂諫, 降諫, 微諫

### 3. 군주의 자질과 납간 유형과의 상관성

중국의 삼대[夏殷周] 이후 성군 현군 또는 창업군주들은 ‘언관들이 어떤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때도 나라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으며 나라가 혼란해지기 전에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다’(『明祖記』, “言官見危於無形, 制治於未亂”)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언관(言官)들에게 ‘말길을 널리 개방’(廣開言路)하는 한편, 그들이 간하는 말을 물 흐르듯 받아들여거나(從諫如流) 반상에 구슬 구르듯 따랐던(從諫若轉圜) 것이다(『韓愈』 爭臣論).

이와는 반대로 언로를 봉쇄하고 충언을 거부하며 심지어 백성의 입을 막는 등 의사소통을 통제하거나 거부하였던 모든 왕조는 군주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모두 멸망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예컨대 간하는 말을 거부할 만큼 지혜가 충분하였고 비위를 분식할 만큼 언변이 좋았던 주왕(紂王)은 신하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몸을 망치게 되어 후세에 경계해야 인물의 표본이 되었다.

이처럼 간언을 거절하고 자신의 비위를 분식함으로써(拒諫飾非) 자기 뜻대로 독단하는 폭군들은 우선적으로 민심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민심을 잃어버리게 된 군주는 결국 임금자리(君位)를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나라도 반드시 화를 입게 된다’(『荀子』 成相篇, “拒諫飾非, 愚而上同, 國必禍”)는 관념이, 중국 고대로부터 형성되어 지금까지 내려오는 변하지 않은 역사적 율법이 되었다. 즉, ‘군주가 간언을 받아들여느냐(納諫) 또는 간언을 거절하느냐(拒諫)여부에 따라 군주 본인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唐書』 李絳傳, “自古納諫昌, 拒諫亡”)는 인식을 하였던 것이다(김영주, 1991b, 143-144쪽).

조선시대 초기부터 이러한 인식은 이미 정착되어 있었다. 조선 개국 직후인 1392년(태조 1년) 7월 20일, 사헌부에서 임금에게 정책방안 10개 조목을 올렸는데 네 번째 조목이 ‘납간(納諫;從諫;聽諫)하면 나라를 살리는 동시에 군주 개인도 성스럽게 된다’고 보았다. 이 조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천자가 쟁신(諍臣) 7인만 있으면 비록 무도(無道)하더라도 천하를 잃지 않을 것이며, 제후가 쟁신 5인만 있으면 비록 무도하더라도 국가를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제하면서, ‘간언을 따르고 거절하지 말며, 간언을 따르는 임금은 성스럽게 된다’(『태조실록』 태조 1년 7월 己亥條, “天子有諍臣七人, 雖無道, 不失其天下, 諸侯有諍臣五人, 雖無道, 不失其國家. ... 從諫不拂. 又曰, 后從諫則聖”)고까지 언급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납간, 중간, 청간, 비거간(非拒諫), 불거간(不拒諫) 등의 용어가 모두 1,250건이나 출현하고 있어, 군주에게 언척자[言官]들의 간언을 받아들일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군주의 납간 스타일에 따라 군주 개인 및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관념이 정착되어 있었다.

예컨대, 1509년(중종 4년) 4월 경연석상에서 언관인 정언 공서린(孔瑞麟)은 ‘임금마다 납간 스타일이 달라서 간언을 즐기는 자[樂諫者], 간언을 용납하는 자[用諫者], 간언을 버리는 자[棄諫者], 간쟁자를 죽이는 자[殺諫者] 등 4가지 부류가 있다’가 전제하고, “낙간자는 성스럽게 되고[聖] 용간자는 어질게 되며[賢], 기간자는 어지럽게 되고[亂], 살간자는 망하게 된다[亡](『중종실록』 중종 4년 6월 壬戌條, “人君聽諫不同. 有樂諫者, 有用諫者, 有棄諫者, 有殺諫者. 樂諫者聖, 用諫者賢, 棄諫者亂, 殺諫者亡”)라며, 군주의 납간 스타일을 4가지로 분류하고, 자신들의 군주[中宗]는 ‘낙간자라기 보다 용간자’(殿下可謂之用諫, 不可謂之樂諫)임을 천명하였다.

이와 함께 1510년(중종 5년) 1월 홍문관 관리인 이자견은 군주의 납간 스타일을 낙간자

(樂諫者), 납간자(納諫者), 염간자(厭諫者), 노간자(怒諫者) 등 4가지로 분류하면서, ‘납간 스타일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언명하였다. 이어서 그는 “마음과 행동에 과실이 없고 다스리는 도리에 결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계하는 말을 듣고자하여 충성을 바치도록 인도하고 말을 다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일러서 낙간(樂諫)이라 하는데 낙간자는 흥(興)한다. 마음과 행동에 과실이 없지 않고 다스리는 도리에 결함이 없지 않으나 말하면 즉시 깨닫고 들으면 곧 고치는 것을 일러 납간(納諫)이라 하는데 납간자는 창성[昌]한다. 마음과 행동에 과실이 있는데도 고치려고 하면 기뻐하지 않고 다스리는 도리에 결함이 있어 간하면 고치기를 싫어하는 것을 일러서 염간(厭諫)이라 하는데 염간자는 쇠(衰)한다. 허물과 악이 날로 늘어 가는데도 간쟁자를 미워하고 국사가 날로 글러 가는데도 강경하게 다루는 사람을 미워하고 간언을 따르지 않은 채 도리어 형벌을 내리는 것을 노간(怒諫)이라 하는데 노간자는 망(亡)한다”(『중종실록』 중종 5년 1월 丙子條)고 인식하였다.

조선시대 중반기 언관들은 군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간(拒諫)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즉, ‘낙간을 거부하다 보면 납간하지 않게 되고 이것이 염간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노간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보았다. 그런 까닭에 “옛날의 성군들은 자신의 허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였으며, 알게 되면 곧 고치고, 정치의 잘못이 있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고 들으면 곧 받아들여지게 되었다”(『중종실록』 중종 5년 1월 丙子條).

당시 그들은 “군주가 간언을 기뻐하고 즐긴 다음에야 신하들이 즐겨 고하게 되며, 이런 결과로 군주는 저절로 허물이 없어지게 되는 법”이라 전제하면서, “간언을 따르는 것이 간언을 기뻐하는 것만 못하고, 간언을 기뻐하는 것은 간언을 즐기는 것만 못하다”(『중종실록』 중종 21년 10월 壬申條, “從諫不如喜諫, 喜諫不如樂諫”)고 인식하여, 군주의 납간 스타일 가운데 ‘낙간(樂諫)이야말로 군주 자신의 허물을 없애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고 간주하였던 것이다.

한편, 신하들의 진간과 군주의 납간과의 상관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중국고대 철학자인 순자(荀子)는 군주의 납간 스타일에 따라 성군(聖君), 중군(中君), 폭군(暴君) 등 3가지로 유형화하고, 군주유형에 따라 간쟁양식을 달리 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즉, 그는 “성군을 섬기는 자는 군주의 하는 말에 복종만 하면 되지 간쟁할 필요가 없으며, 중군을 섬기는 자는 간쟁만 하면 되지 아첨할 필요가 없고, 폭군을 섬기는 자는 미봉책은 있어도 보필할 도리가 없다. 간쟁자가 난세에 위협을 당하여 폭군의 나라에서 괴로운 생활을 모면할 길이 없다면, 그 군주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잘하는 것을 들추고 나쁜 점을 숨기며, 결점은 은폐하고 장점을 말해도 폭군의 단점을 말할 수는 없다”(『荀子』 臣道篇, 第十三)고 천명하였다.

순자는 위의 논지를 좀 더 발전시켜 “성군을 섬기는 신하의 도리는 공정하고 겸손하며 힘써 따르고 자기의 의사로 선택·결정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의사로 주고받지 아니하고 다만 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중군을 섬기는 신하의 도리는 충성스럽고 믿음을 가지되 아첨하지 않고 다투어 간하되, 의견한 태도로 결단하고 심지를 단정하게 하여 어느 편에 기울어지지 아니하며 옳은 것은 옳다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시비를 분명히 가리면 되는 것이다. 폭군을 섬기는 신하의 도리는 잘 어울리되 무턱대고 휩싸이지 않고 부드러운 면서 굴종하지 않고 관용하면서 혼란에 빠지지 않으며, 최고의 도리를 분명히 말하되 조화를 잃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군주를 감화시켜 나가고 적당한 기회를 봐서 착한 말을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荀子』 臣道篇, 第十三)이라 주장하였다.

<표 3> 군주의 자질과 납간과의 상호관련성

커뮤니케이션 요소	커뮤니케이터 (신하;언책자) 차원		수용자(군주) 차원			효과적 차원		역사적 인물		
	간쟁유형	위험수위별 간쟁그룹	군주자질 유형	간쟁에 대한태도	군주납간 유형	군주개인 효과차원	국가 효과차원	중종실록 주장	제각생 주장	
구체적 내용	해당사항 없음 (順志)	간쟁 필요없음	성군	성군	납간 (納諫)	낙간자	성(聖)	흥(興)	요, 순, 우	우왕 은무정 주문무왕
	직간, 극간 중간, 시간 절간, 읍간	고위험도 간쟁그룹	중군 / 용주	현군		용간자 (납간자)	현(賢)	창(昌)	은태감, 주성왕, 한문제, 당태종	한고제 한광무제 당태종
	규간 (規諫), 지간, 순간, 치간	중위험도 간쟁그룹		암군	기간자 (염간자)	난(亂)	쇠(衰)	한무제, 당현종, 송철종	걸주 주려왕 우군	
	풍간, 기간 미간, 침간 향간, 규간 (闕諫)	저위험도 간쟁그룹	폭군	폭군	거간 (拒諫)	살간자 (노간자)	망(亡)	망(亡)	걸주, 부차, 진영공	초희왕 진시황 초항우

(출전 : 김영주, 1991b, 152쪽) 일부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음.

그런데, 순자의 전후 설명이 조금의 차이가 나는 것은 폭군에 대한 간쟁 여부이다. 전자의 경우 폭군에게는 보필할 도리가 없는 까닭에 간쟁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 반면, 후자는 적당한 기회를 틈타 부드럽게 간쟁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요약컨대, ‘성군에게는 뜻을 받들어 따르기만 하면 되지만(順志), 중군에게는 간쟁하되 아첨하지 않으면 되며(規諫), 폭군에게는 부드럽게 간쟁하는 것(微諫)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순자의 인식을 『중종실록』의 논지와 결합하면, 성군에게는 간쟁 자체가 필요 없고, 폭군에게는 간쟁의 효과가 미약하겠지만 저위험도 간쟁유형과 서로 부합하며, 중군에게는 중위험도 내지 고위험도 간쟁유형과 서로 부합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군주의 3가지 유형 가운데 간쟁의 필요성이 가장 절실한 군주는 현실정치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군(中君;庸主)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성군은 끌어올릴 수 있으며 끌어내릴 수 없고, 폭군은 끌어내릴 수 있으며 끌어올릴 수 없는 반면, 중군은 끌어올릴 수도 있고 동시에 끌어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新語』第五卷, 連語).

『중종실록』에서 군주의 납간 스타일에 해당하는 역사적 인물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예컨대, 낙간자(樂諫者)에는 ①진선지정(進善之旌)을 설치한 요(堯)임금 ②문기와 살피기를 좋아한 순(舜)임금 ③착한 말[昌言]을 들으면 절을 하였던 우(禹)임금 등이 속하고, 납간자(納諫者)에는 ①이윤(伊尹)의 훈계로 허물을 뉘우친 태갑(太甲) ②주공(周公)의 무일편(無逸篇)으로 덕을 성취한 성왕(成王) ③한문제(漢文帝) ④당태종(太宗) 등이 속한다. 반면 염간자(厭諫者)로는 ①급암(汲黯)의 직언을 꺼렸던 한무제(漢武帝) ②한휴(韓休)의 곧은 말을 꺼린 당현종(唐玄宗) ③경생(京生)의 말을 꺼린 서한의 효원제(孝元帝) ④순인(純仁)의 말을 거절한 송철종(宋哲宗) 등을 열거하였으며, 노간자(怒諫者)로는 ①관용봉(關龍逢)을 죽인 걸(桀) 임금 ②왕자 비간(比干)을 죽인 주(紂)임금 ③자서(子胥)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부차(夫差) ④설치(洩治)를 죽게 한 진영공(陳靈公) 등을 지적하였다(『중종실록』 중종 5년 1월 丙子條).

대만의 언론학자인 제각생은 군주의 납간 스타일을 4가지로 분류하였던 『중종실록』과 다르게 두 가지 부류 즉, 납간자(納諫者)와 거간자(拒諫者)로 분류하면서 각기 해당되는 역사적 인물을 적시하였다(1964, 16-17쪽). 예컨대, 현군(賢君)인 납간자에는 ①우임금 ②풍간을 들었던 은무정(殷武丁) ③주문무왕(周文武王) ④한고조(漢高祖) ⑤후한광무제(後漢光武帝) 등을 적시한 반면, 폭군 및 용주(庸主)인 거간자에는 ①결주(桀紂) ②주나라 여왕(厲王) ③우나라 우왕(虞王) ④오나라 부차(夫差) ⑤초나라 회왕(懷王) ⑥진나라 시황(始皇) 등을 나열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진간과 납간과의 상관관계를 커뮤니케이터(신하) 차원, 수용자(군주) 차원, 효과적(군주·국가의 흥망여부) 차원으로 각각 나누어 항목간의 유기적 관계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표 3>에 나타나듯이 군주가 만약 성군이면 간쟁이 필요치 않으나 간언을 즐겨 듣는 낙간자가 되면 군주 개인적으로는 성군이 되는 동시에 나라도 흥하게 되는 반면, 간언에 대해 화를 내고 언척자를 죽이는데 까지 이르게 되면 폭군이 되는 동시에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 중국이나 조선 역사상 등장하는 대부분의 군주들은 간언이 매우 필요한 중군[용주]이기 때문에 신하들은 군주의 정치득실과 허물에 대해 역사적 인물이나 사실을 전거로 삼아 다양한 간쟁 유형을 통해 간쟁함으로써 군주가 폭군이나 암군(暗君)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성군이나 현군으로 될 수 있도록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 4. 諫諍 유형의 출현빈도와 그 용례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고려사절요』, 『고려사』 등의 사료에서 다양한 간쟁 유형이 출현하고 있었다. 『삼국사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간(直諫) 2회, 극간(極諫) 1회, 절간(切諫) 1회, 충간(忠諫) 1회, 시간(尸諫) 1회 등을 사용하였으며, 극간과 비슷한 의미인 극론(極論)도 2회 정도 사용하였다. 삼국시대는 ‘간’[간쟁] 단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횟수(31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두 단어 형식인 간쟁 유형은 6회 정도로 적게 사용하고 있어 간쟁 유형이 정착단계에 들어서진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간’이나 ‘간쟁 유형’의 출현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긴 했지만 조선시대와 비교해 보면 명백한 차이가 드러난다. 예컨대, 『고려사』를 살펴보면 간쟁 단어가 461건이 나타나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두 단어 형식인 간쟁 유형은 극간 7회, 절간 6회, 읍간(泣諫) 3회, 규간(規諫) 2회, 직간 1회, 충간 1회, 풍간(諷諫) 1회 등이 나타나 양적으로 극히 적었다. 그 가운데 극간과 비슷한 의미인 극론(極論)이나 극언(極言) 등의 단어는 각각 15회, 23회가 사용되어 고려시대의 신하들은 극간[극론;극언] 형식을 통한 진간(進諫)행위를 다른 간쟁유형보다 선호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간쟁 유형은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비해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띤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에 나오는 간쟁 유형과 그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는 ‘간’(諫) 자가 각각 5만건 이상 출현하고 있으며, ‘간쟁’(諫諍;諫爭) 단어는 왕조실록에 521건, 승정원일기에 473건이 각각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두 단어 형식의 간쟁 유형 역시 삼국시대(『삼국사기』 6건)와 고려시대(『고려사』 21건)에 비해 조선시대(『조선왕조실록』 729건, 『승정원일기』 598건)에는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 다양한 간쟁 스타일이 완전히 정착단계로 접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한국의 역대 사서에 등장하는 간쟁 유형 건수

간쟁유형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고려사		삼국사기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극간(極諫)	219	30.0	74	12.4	7	33.3	1	16.7
직간(直諫)	119	16.3	185	30.9	1	4.8	2	33.3
규간(規諫)	108	14.8	101	16.9	2	9.5	0	0.0
충간(忠諫)	77	10.6	93	15.6	1	4.8	1	16.7
절간(切諫)	46	6.3	23	3.8	6	28.6	1	16.7
읍간(泣諫)	39	5.3	35	5.9	3	14.3	0	0.0
기간(幾諫)	35	4.8	13	2.2	0	0.0	0	0.0
풍간(諷諫; 風諫)	25	3.4	28	4.7	1	4.8	0	0.0
정간(正諫)	19	2.6	14	2.3	0	0.0	0	0.0
강간(強諫)	17	2.3	12	2.0	0	0.0	0	0.0
시간(尸諫; 屍諫)	14	1.9	10	1.7	0	0.0	1	16.7
홀간(譎諫)	5	0.7	7	1.2	0	0.0	0	0.0
쟁간(爭諫; 諍諫)	3	0.4	3	0.5	0	0.0	0	0.0
당간(戇諫)	2	0.3	0	0.0	0	0.0	0	0.0
함간(陷諫)	1	0.1	0	0.0	0	0.0	0	0.0
	729	100.0	598	100.0	21	100	6	100.0

여기서 등장하는 간쟁 유형을 중국의 여러 고전에서 언급한 주요 간쟁유형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중국 고전에서 오간(五諫)의 하나로 예시되고 있는 유간(遺諫), 향간(降諫), 치간(致諫), 지간(指諫), 첨간(諛諫), 순간(順諫), 규간(闕諫), 함간(陷諫), 당간(戇諫) 등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반면, 직간(直諫)이 가장 많은 304건(22.9%), 그 다음으로 극간(極諫 ; 293건 / 22.1%), 규간(規諫 ; 209건 / 15.7%), 충간(忠諫 ; 170건 / 12.8%)이 뒤를 이었으며, 읍간(泣諫 ; 74건), 절간(切諫 ; 69건), 풍간(諷諫; 53건), 기간(幾諫 ; 49건) 등이 각각 3.6 - 4.6% 사이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정간(正諫 ; 33건), 강간(強諫 ; 29건), 시간(屍諫; 尸諫 ; 24건), 홀간(譎諫 ; 12건), 쟁간(爭諫; 諍諫 ; 6건) 등은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간쟁유형이 중국보다 다양하지 못하고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특정한 간쟁 스타일 이른바 고위험도 간쟁유형들을 중위험도 및 저위험도 간쟁유형보다 월등하게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 나타나는 간쟁유형들은 대략 15가지 종류인데, 이 중에서 중위험도 간쟁유형은 1종류[규간], 저위험도 간쟁유형은 3종류[풍간, 기간, 함간]인데 비해 나머지 11종류는 고위험도 간쟁유형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두 문헌에 나오는 위험수위별 간쟁그룹 출현건수를 비교해 보아도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경우 총 729건 가운데 고위험도 간쟁그룹 출현건수가 556건(76.3%)으로 전체의 3/4을 차지한 반면, 중위험도 간쟁그룹 출현건수는 108건(14.8%), 저위험도 간쟁그룹 출현건수는 65건(8.9%)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비율은 『승정원일기』의 경우도 비슷하다(<표 5> 참조).

조선시대 가장 많이 출현하고 있는 간쟁 유형은 직간(直諫)으로서, '임금의 면전에서 잘못된 주장을 꺾고'[面折], '조정안에서 직접 임금의 잘못을 다투는 것'[廷爭]을 불사해야 한다. 이처럼, 직간은 이러한 면절(面折)과 쟁쟁(廷爭; 廷諍)을 통해 군주를 경계토록 하고 두려워

<표 5>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등장하는 위험수위별 간쟁그룹 출현건수

위험수위별 간쟁유형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고위험도 간쟁 그룹	556	76.3	449	75.1
중위험도 간쟁 그룹	108	14.8	101	16.9
저위험도 간쟁 그룹	65	8.9	48	8.0
합 계	729건	100.0	598건	100.0

하는 마음을 항상 품게 하는 것이다(齊覺生, 1964, 9쪽). 『조선왕조실록』에는 직간의 구체적 수단으로 간주되는 ‘면절’이 82건(태종 1건을 시작으로 세종 5건, 성종 19건, 연산조 10건, 중종 12건, 고종 2건 등), ‘정쟁’이 121건(세종 8건을 시작으로 성종 12건, 연산조 12건, 중종 14건, 명종 11건, 고종 2건 등)이 나타났다. 그리고, 직간 용어의 출현빈도가 대체로 많은 군주는 성종(10건), 연산군(11건), 중종(22건), 인조(12건), 효종(9건) 등인데, 위의 두 용어[면절, 정쟁] 출현빈도와 상관성이 매우 높았다.

직간과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는 간쟁 유형은 극간(極諫)으로서, 사실상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간쟁 유형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극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극언(極言)과 극론(極論)이 『조선왕조실록』에 각각 800건, 479건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한편, 『승정원일기』에서는 직간(185건), 규간(101건), 충간(93건) 등의 간쟁유형이 극간(74건)보다 적게 사용하고 있지만, 극언(631건) 및 극론(203건)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서 여기서도 극간 형태가 가장 많이 출현하는 간쟁 유형이다.

조선시대 군주 가운데 극간 용어가 상대적으로 많이 출현하는 시기는 세종조 28건, 성종조 32건, 연산조 25건, 중종조 37건, 명종조 23건 등으로 나타났다. 고대 중국이나 조선시대 사서에는 죽음을 무릅쓰고 극간하는 수많은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다. 예컨대, 직간 부문에서 상술한 면절(面折)과 정쟁(廷爭;廷諍)을 비롯하여 한나라 주운이 효성제에게 강력히 간하다가 격노를 사서 전상(殿上)에서 끌려 나올 때 어전의 난간을 붙잡고 버티다가 난간이 부러졌다는 절함(折檻 ; 78건), 위나라 신비가 위문제에게 간했을 때 임금의 대답 없이 내전으로 들어가려하자 임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면서 간하였다는 견거(牽裾 ; 147건), 후한의 장강이 지방에 대한 감찰을 거부하고 조정의 문란을 순제에게 간하기 위해 자신이 타고 갈 수레바퀴를 낙양 도정에 묻었다는 매륜(埋輪 ; 10건), 송나라의 진화가 휘종에게 당시 권신들을 멀리 귀양보낼 것을 건의하는 도중 임금이 나가자 옷자락을 잡아당기다가 임금의 옷이 찢어졌다는 쇄의(碎衣 ; 6건) 등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조선시대 초기인 1416년(태종 16년) ‘세 번 간쟁하여 군주가 듣지 않으면 언관직을 떠나야 하며, 간쟁을 세 번 이상 하면 법에 저촉된다’(三諫不聽則去. 三諫之後, 更諫者抵罪)는 군주의 교지를 내리자 언론 양사에서 반대상소를 올리기를, “성왕(聖王)이 간쟁에 의해 도움을 받지 않음이 없는 까닭에 대간을 일컬어 이목(耳目)이라 합니다. 이번 교지(教旨)는 성조(聖朝)에서 행할 만한 법이 아닙니다. (언관은) 직책이 언로를 여는데 있으면서 만약 할 말이 있으면 마땅히 말을 다해야 합니다. (임금은) 사소한 것조차 본받아야 하는데, 성을 내고서 간다면 장차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옛사람이 면절(面折), 정쟁(庭諍), 견거(牽裾), 절함(折檻)을 한 것 또한 죽음으로써 간쟁한 것이었다”(『태종실록』 태종 16년 6월 庚午條 ; 『세종실록』 세종 23년 윤11월 丁丑條 ; 『성종실록』 성종 25년 2월 乙酉條 ; 『중종실록』 중종 2년 9월 辛酉條)라고 천명하였다. 이러한 극간 유형들은 신하들의 아첨하는 풍토를 없애는 동시에 결국 ‘임금을 사랑(愛君)하는 마음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하였다.

극간보다 더욱 극단적으로 보이는 시간(屍諫;尸諫)은 조선시대 자주 사용한 간쟁 유형(14건)이 아니었다. 시간은 『조선왕조실록』에 성종조 2건을 시작으로 선조조 1건, 인조조 1건, 숙종조 1건, 영조조 3건, 정조조 3건, 고종조 3건 등이 나타났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용례를 살펴보면, 1478년(성종 9년) 3월에 이조판서 강희맹이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직상소를 올리면서, “옛날에 사추(史鱗)는 거백옥(蘧伯玉)을 등용하지 못하자 오히려 시간(屍諫)하였는데, 하물며 신은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나고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다만 재주와 지혜가 용렬하여 직임에 칭당(稱當)하게 하지 못하고 무안한 모습으로 구차히 처해 있으니, 신은 실로 낮이 두껍습니다. 앞으로 성자(聖慈)를 바랍니다”(『성종실록』 성종 9년 3월 庚辰條)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1599년(선조 32년) 4월 전 형조좌랑 강항이 임금에게 상소하기를, “옛사람 중에 시간(尸諫)까지 하여 죽음에 임박해서도 임금을 잊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으니, 참으로 국가에 이익되는 일이 있다면 또한 죄인이라 하여 마침내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선조실록』 선조 32년 4월 甲子條, “古之人有以尸諫, 臨死而不忘其君者, 苟有利於國家, 則亦不可以罪人而遂已也”)라고 기술하였다. 한편, ‘목숨을 걸고 우직하게 간한다’는 의미로 시간과 비슷한 함의를 가진 간쟁유형으로 함간(陷諫) 및 당간(戇諫)이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간쟁유형(2건 ; 1건)이었다.

조선시대에 세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규간(規諫)은 『조선왕조실록』에서 108건이 출현하였는데, 다른 간쟁유형과는 달리 각 군주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가운데서도 10건 이상 출현하는 경우는 성종조(13건), 중종조(14건), 영조조(10건) 정도이다. 규간의 용례를 살펴보면, 흔히 대간의 공식적 직무와 연관하여 나타난다. 1403년(태종 3년) 의정부에서 대간들의 탄핵하는 버릇을 금하도록 청하면서, “대간은 전하의 이목지관(耳目之官)이므로, 오로지 규간(規諫)과 백관의 규탄을 맡아서, 무릇 국가의 이해(利害)와 생민의 휴척(休戚)에 동심협력하여 널리 보좌하는 것이 직책이다(『태종실록』 태종 3년 6월 癸亥條, “臺諫, 殿下耳目之官, 專掌規諫及彈糾百官, 凡國家利害、民生休戚, 并心協力, 匡救輔翼, 職也“ ; 『세종실록』 세종 11년 8월 癸未條)라고 기술하였다.

한편, 규간(規諫)과는 의미가 다른 규간(闕諫)은 ‘군주의 얼굴을 살펴 간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사서에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중국 고전들 예컨대 『白虎通』, 『後漢書』, 『淵鑑類函』 등에는 오간의 하나로 기록하였다. 이 문헌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白虎通』(일명 『白虎通義』)인데, 후한의 장제(章帝)가 여러 학자들을 백호관에 모아놓고 오경의 동이(同異)를 변정케 한 내용을 후한 초기의 역사학자인 반고(班固)가 찬집한 것이다. 이 간쟁유형은 조선시대가 극간, 직간 등을 바람직한 간쟁 유형으로 인식하였던 까닭에 거의 나타나지 않은 간쟁 스타일이다.

충간(忠諫)은 직간과 극간 등과 더불어 비교적 많이 등장하는 간쟁유형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77건(세종조 2건, 세조조 1건, 성종조 7건, 연산조 5건, 중종조 3건, 명종조 2건, 선조조 2건, 광해조 6건, 인조조 11건, 효종조 8건, 현종조 11건, 숙종조 10건, 영조조 6건, 정조조 1건, 고종조 2건)이 보이는데, 군주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용례를 보면, 1459년(세조 5년) 1월 우정자(右正字) 허충이 임금에게 언로를 열어줄 것을 청하면서, “절함(折檻)·견거(牽裾)하는 사람은 진실로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분격하여 그 목숨도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임금이 그 안색을 온화하게 하여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부당하게 뒤따라 죄를 주면 충간의 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세조실록』 세조 5년 1월 戊戌條)라고 하였다.

당시의 사대부들은 충간을 절함(折檻)·견거(牽裾)와 연관시켜 설명함으로써 극간과 직간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읍간(泣諫)은 가끔씩 행해지는 간쟁유형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 39건이 보이는데, 세조 2건을 비롯하여 성종조 4건, 연산조 1건, 중종조 3건, 명종조 2건, 선조조 3건, 광해조 11건, 인조조 2건, 효종조 2건, 현종조 1건, 숙종조 1건, 영조조 5건, 정조조 1건, 순조조 1건 등이 출현하였다. 읍간은 동생이 형님에게 또는 자식이 부모에게, 왕이 모후에게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세조실록』 세조 11년 2월 癸未條 ; 『세조실록』 세조 13년 4월 庚子條 ; 『성종실록』 성종 23년 11월 丙申條).

그러나, 예외적으로 조정에 긴박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신하가 임금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간쟁양식’[泣諫]을 사용하는 때도 있었다. 1568년(선조 1년) 9월 언론 삼사에서 남곤 등의 간악한 죄를 논계하기를, “남곤과 심정·홍경주는 밤에 신무문으로 들어가서 불측한 말로 중종을 놀라게 하고, 또 미리 무사를 준비하여 그날 밤에 조광조 등을 박살내려 하였으나 정광필이 탐전에 나아가 읍간(泣諫)하였기 때문에 가까스로 유배에 그쳤습니다”(『선조실록』 선조 1년 9월 己巳條)라고 하였다. 중종의 마음을 돌린 정광필의 읍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공자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던 풍간(諷諫; 風諫)은 극간과 직간을 선호하였던 조선시대의 분위기 때문에 드물게 사용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25건(3.4%) 가운데, 태종조 2건을 비롯하여 성종조 3건, 중종조 6건, 명종조 1건, 광해조 2건, 인조조 3건, 효종조 2건, 숙종조 3건, 영조조 2건, 고종조 1건 등이 사용되었다. 풍간은 임금을 유교적 지배 이데올로기로 정치사회화 시켰던 제도적 장치인 경연석상에서 옥당 관리들이 진언하는 간쟁 유형으로 정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성종실록』 성종 25년 5월 戊子條 ; 『중종실록』 중종 1년 10월 戊申條 ; 『숙종실록』 숙종 12년 윤4월 癸酉條).

## 5. 맺는 말

조선시대는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와 달리 ‘언론’이라는 단어가 『조선왕조실록』에 골고루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일상적인 용어로 정착되어 있었다. ‘언론’ 단어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만큼 중국 고전에서 사용된 언론의 개념 즉, ‘어떤 논제에 관해 바른 말 또는 결점을 들어 비난·공격하는 말을 통하여 각자의 의견을 나타내는 일’[言語議論]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용어의 구체적 개념을 오직 하나로 확정할 수 없다. 다만, 언관(言官)이나 언론기관인 삼사(三司)와의 관련성 속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것은 ‘군주의 정치독실에 대한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개념 규정할 수 있다.

한편,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조들은 ‘언론’의 유사 개념으로 ‘신하가 정직한 말로써 군주에게 허물을 고치도록 진언하는 행위’라는 뜻을 가진 ‘간쟁’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여 왔다.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 순자는 간쟁 단어를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 간(諫)과 쟁(諍)의 합성어’로 보았다. 즉, 간(諫)은 국가의 위기시 군주에게 충고의 말을 올려 듣지 않으면 직책을 떠나는 것을 말하고, 쟁(諍; 爭)은 군주가 충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목숨을 바치는 것을 말한다.

간쟁은 군주가 거간할 때 언척자들이 직책을 사임하든가 아니면 생명을 바치든가 하여, 근원적으로 매우 과격한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행위였다. 언권(言權)을 가진 언관들은 권력을 전단하려는 군주에게 다양한 간쟁양식을 통해 그의 과실을 바로 잡고 정치독실을 비판함

으로써, 조정관리 및 사림들의 공론[조정공론, 사림공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처럼 비장한 의미를 지닌 간쟁은 ‘왕권(王權) 통제의 기제’로서 고대부터 근세까지 중국과 한국의 정치운용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신하들의 다양한 간쟁 스타일에 대해 군주들은 역사적 상황과 개인 성향에 따라 납간 및 거간을 하게 되었다. 군주의 납간 유형은 낙간자(樂諫者), 용간자(用諫者; 納諫者), 기간자(棄諫者; 厭諫者), 살간자(殺諫者; 怒諫者) 등 4가지 종류가 있다. ‘간언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군주’인 낙간자는 성군으로서 그의 나라는 흥하며, ‘간언을 따르는 군주’인 용간자는 현군으로서 그의 나라는 창성한다. 반면, ‘간언을 듣기 싫어하는 군주’인 기간자는 암군(暗君)으로서 그의 나라는 쇠하며, ‘간언을 미워하고 심지어 언책자를 죽이기 군주’는 폭군으로서 그의 나라는 망한다. 이처럼 ‘군주의 납간유형에 따라 흥창쇠망(興昌衰亡)이 결정된다’는 인식이 조선시대에는 팽배하였다. 그런 이유로 『조선왕조실록』에는 납간·중간·청간·비거간(非拒諫)·불거간(不拒諫) 등의 용어가 1,250건이나 등장하고 있어, 언책자[言官]들의 간언을 군주가 받아들이도록 끊임없이 주장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 군주들은 납간보다 거간을 더 선호하는 중군[용주]들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들이 거간하는 이유는 너그럽게 용납하는 것은 굴종하는 것이라며 혐오하였고, 지나치게 거절함은 존엄해지는 것이라며 기뻐하였기 때문이었다. 1655년(효종 6년) 11월 당시의 영의정 이시백(李時白)과 우의정 심지원(沈之源)이 올린 차자의 내용에 거간의 명분이 나열되어 있다. 즉, “간곡한 간언[切諫]은 비위를 거슬러 용서하기 어렵고, 완곡한 간언[幾諫]은 범위가 넓어 이해하지 못하며, 직선적인 간언[直諫]은 권위를 침범한다고 싫어하고, 넉넉히 돌려서 간[風諫]하는 것은 비방한 것으로 의심하였다”(『효종실록』 효종 6년 11월 庚寅條, “優容嫌於降屈, 宥截喜於嚴崇. ... 切諫忤而難恕, 幾諫泛而不瑩, 直諫惡其犯, 風諫疑其訕”)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군주가 거간함으로써 아래에 굽히지 않으며 헤아리고 숨기는 데 먼저 마음을 쓰고 남들에게 이기기를 힘쓰면, 결국 나라와 군주 개인은 멸망하는 데 이르게 된다고 인식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시대적 상황이나 군주의 통치스타일, 신하(간쟁자)의 성품 등에 따라 15가지 정도의 다양한 간쟁유형들이 존재하였다. 중국 고전에는 통상적으로 간쟁유형을 ‘오간’(五諫)으로 분류하였는데, 대략 4가지 그룹으로 나눈다. 첫째 그룹은 쟁간(爭諫; 諍諫)이 들어있는 『예기』 계열이며, 둘째 그룹은 향간(降諫)·홍간(譎諫)이 들어있는 『공자가어』 계열이다. 셋째 그룹은 규간(闕諫)·지간(指諫)·함간(陷諫) 등이 들어있는 『백호통』 계열이며, 넷째 그룹은 규간(規諫)·치간(致諫) 등이 들어있는 『구당서』 계열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의 문헌에서 간쟁 유형에 대한 수많은 기록과는 달리 ‘오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 중국과는 다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다양한 간쟁유형들은 언책자들의 파직, 유배, 죽음 등을 당할 가능성(위험수위)에 따라 고위험도·중위험도·저위험도 간쟁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고위험도 간쟁그룹은 군주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망각한 채 극렬하게 간쟁하는 것을 유형화하였다. 둘째, 중위험도 간쟁유형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고사와 전례를 들며 바르게 간쟁하는 것을 유형화하였다. 셋째, 저위험도 간쟁그룹은 군주의 마음상태를 살피서 은근히 돌려서 간하는 것을 유형화하였다.

고대 중국과 조선시대의 인식은 ‘성군에게 간쟁 자체가 필요 없지만, 중군에게는 중위험도 및 고위험도 간쟁유형이 부합하며 폭군에게는 간쟁해야 소용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저위험도 간쟁유형과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 속에서 조선시대가 가장 선호한 간쟁유

형은 고위험도 간쟁유형이었으며, 다음이 중위험도 간쟁유형이고, 마지막이 저위험도 간쟁유형이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고려 말에 형성되기 시작한 주자학적 학풍을 지닌 신흥사대부들이 주도하여 조선을 건국하였으며 주자학을 국교화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충성스럽게 올리는 말이 임금의 귀를 거슬리지만’[忠言逆耳] 극간[극언;극론] 스타일의 고위험도 간쟁을 선택하는 까닭은, 말을 교묘하게 잘하여 듣는 사람의 귀에 거슬리지 않으면 공론이 되지 못하고 아침이 되기 쉬워서 오히려 군주 개인이나 국가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차라리 격렬하고 박절한 말로 군주를 깜짝 놀라게 함으로써 언책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며 나아가 군주의 잘못을 고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연산군일기』 연산군 1년 1월 丙午條).

조선시대 초기부터 “간쟁은 천하국가의 원기인 공론[여론]의 뿌리가 되고, 아침은 공론의 독이 되니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항상 그 뿌리를 배양하고 그 독을 제거한다면 바른 의론이 나날이 나오고 감언이설은 귀에 들리지 않게 된다”(『태조실록』 태조 1년 11월 丙戌條)고 천명하였다. 사실 공론은 국가에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통치자가 간언을 목마른 자가 물구하듯 구하고 언책자를 진실로 믿어준다면 백성의 이해를 모두 진술하게 되고 그 결과 공론[國家之元氣]은 물 흐르듯 유통된다. 이처럼 조선시대는 구언(求言), 간쟁, 공론과의 상호관련성을 철저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참고자료

1.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2.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홈페이지([http://sjw.history.go.kr/intro/intro\\_05.jsp](http://sjw.history.go.kr/intro/intro_05.jsp))
3.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http://www.itkc.or.kr/MAN/index.jsp>)
4.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http://e-kyujanggak.snu.ac.kr/index.jsp>)
5. 中華學術院(1980). 『中文大辭典』(五版). 臺北：中國文化學院出版部.
6. 漢語大詞典 編纂委員會(1990-1994). 『漢語大詞典』(初版). 上海：漢語大詞典出版社
7. 諸橋轍次(1968). 『大漢和辭典』東京：大修館書店.
8. 『二十五史』(1975). 臺北：新文豐出版公司.
9. 『十三經注疏』(1981). 臺北：藝文印書館.
10. 김부식(1976). 『삼국사기』. 신호열譯. 서울：동서문화사.
11. 김종서편(1981). 『高麗史節要』. 서울：명문당.
12. 동아대 고전연구실편(1982). 『高麗史』. 서울：태학사.

### 2. 참고논저

1. 김민환(1996). 『한국언론사』. 서울：사회비평사.
2. 김영주(1985. 5). 삼봉의 언론사상과 태조조의 언론현실고. 『신문학보』. 제19호. 한국신문학회.
3. 김영주(1991a). 조선조 언론사상에 관한 시론 - 言官들의 언론사상을 중심으로. 『언론 사회 문화』. 창간호.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4. 김영주(1991b). 중국의 고대감찰제도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5. 김영주(2002. 12). 조선왕조 초기 공론과 공론형성과정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2권 3호. 한국지역언론학연구회.
6. 박기성(2004). 조선시대 언론 개념의 생태구성. 『사회과학』. 16집.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7. 이규완(2009. 2). 조선왕조의 언론윤리 체계에 관한 시론. 『한국언론학보』. 53권 1호. 한국언론학회.
8. 이상희(1993). 『조선조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연구』. 서울 : 나남.
9. 최정호(1986). 조선조 공론권의 구조변동에 관한 시론. 『사회과학논집』. 제17집.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10. 최정호(1998. 12. 18). 言論과 正名 - 바른 말과 바른 이름. <최정호 교수 정년퇴임기념강연 원고>.
11. 齊覺生(1964). 中國監察制度之起源及演進. 『臺灣學報』. 第三號.
12. 彭勃龔飛(1989). 『中國監察制度史』. 北京 : 政法大學出版社.
13. 閻沁恒(1960). 漢代民意的 形成與其對政治之影響. 『報學』. 二卷 七期.